2024년도 시행

지방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적용요령)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I 취득세

지방세법
1.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명확화(법 §7·§15) ········ 1
2.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 개념 보완(법 §10조의3·영 §22조의2) · 4
3.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법 §20) ······ 7
지방세법 시행령
1. 유사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 산정기간 연장 (영 §14)11
2. 대물변제양도담보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개선 (영 § 18의4) 16
3. 무상취득에 따른 계약해제 인정기간 연장 (영 §20) ······· 19
4. 시실상의 취득가격 적용 시 계약해제 인정 요건 추가 (영 §20) ······ 21
5. 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규정 정비 (영 § 28 · § 28의2 · § 34) ········· 25
6. 멸실 목적 주택 취득 중과세 배제 보완 (영 § 28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1. 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정비(별지 제3호서식 부표) 37
Ⅱ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세법
1. 회생절차 중 등가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법 §26) ······· 45
2.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 및 보완 (법§27) ······ 50

Ⅲ 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법 시행령
1.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변경 (영 §39 관련 별표1) ······· 57
지방세법 시행규칙
1. 법령 개정에 따른 고지서 서식 보완 (별지 제17호서식)63
IV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1. 담배소비세 납세지 명확화(법 § 50) 71
2.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시 특별징수의무자 규정 신설(법 §62의2) 73
Ⅴ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1.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법 § 103의23④·§ 103의37⑤) ········ 81
2.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시 가산세 감경 [법 §103의243] 85
3.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신설 (법 § 103의37⑦) ······ 89
4.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조문 정비 (법 § 103의52) 92
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법 § 103의53①·§ 103의54) ······ 94
6.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괴소신고 기산세 특례 기한 연장법 § 103의61② ····· 97

지방세법 시행령
1.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규정 마련 (영 §100의13③ 등) 101
2. 동업기업 과세특례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영 § 103의31) 104
지방세법 시행규칙
1.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에 따른 서식 정비 (별지 제43호 서식 등) … 113
VI 재산세
지방세법
1.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확대(법 § 118) 131
2.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법 §118의2) 132
3.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부칙 §2) ······· 134
지방세법 시행령
1.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영 §103의2·§118) ········ 137
2. 별장 중교세 대상 제외에 따른 규정 정비(영 §111) 142
TIHLIIIH 1180 7 \$1
지방세법 시행규칙
1. 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정비(규칙 §57) ························· 147
VII 자동차세
지방세법
1. 주행분 자동차세 소액 징수면제 신설 (법 § 137) ····································
I· TOL 시이시에 보기 이 다시 다른 (현 3 10/)

지방세법 시행령
1. 연납 납부서 무신고 송달대상 확대 (영 § 125②) ······· 157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1.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 § 146②3) ······· 163
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법 §143) 164
IX 지방교육세
тінышн
지방세법
1. 지방교육세 조문 정비(법 § 152)169 2. 지방교육세 조문 정비(법 § 152 · § 153)
2. 지방교육세 조문 정비(법 § 152·§ 153) ····································

Ⅰ. 취득세 개정내용

지방세법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명확화(법§7·§15)

□ 개정개요

1

개정 전	개정 후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의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자가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수입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시점에 취득세 과세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구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임차하여 수입하는 <u>금융리스만</u>
운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u>가능한 것으로 오인 가능</u>	<u>명확화</u>

□ 개정내용

- 외국인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항공기, 차량 등)을 ^①직접 사용하거나 ^②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금융리스)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 명확화(운용리스 제외)
 - ※ 과세운영 상 금융리스는 취득세 과세, 운용리스는 비과세(등록면허세 과세)하나, 개정전 규정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 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오인 가능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따라 '24.1.1. 이후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u>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⑤ (생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⑤ (현
략)	행과 같음)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	6
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	
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	
게 대여하기 위하여 <u>임차</u> 하여 수	소유권을 이전 받
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는 조건으로 임차
취득한 것으로 본다.	<u></u>
⑦ ~ 16 (생 략)	⑦ ~ ⑯ (현행과 같음)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생 략)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현행과 같
	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2
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	
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4. 제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	4
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u>해</u>	
<u>당한다)을 임차</u> 하여 수입하는 경	해당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
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u>는 조건으로 임차</u>
로 한정한다)	
5. ~ 8. (생 략)	5. ~ 8. (생 략)

2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 개념 보완(법§10조의3, 영§22조의2)

Ⅱ 개정개요

개정 후 개정 전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세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세 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이 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거래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 비용으로 규정 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과세표준에 포함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성 │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u>방법</u> 등에 대해 <u>미규정</u> 증거서류의 내용 등을 명시

□ 개정내용

- (과세표준) 과세표준 산정 시 과세물건 취득을 위해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하는 자 모두의 비용이 포함되도록 비용 지급 주체 명확화
 - ※ 판례는 개정전 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취득자)에게 지급한 신탁수수료는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 (장부 등 작성) 취득세 과세표준의 객관적인 산출을 위해 법인의 장부 작성 및 증거서류 종류를 명시, 그 작성방식 등을 시행령에 위임

□ 적용요령

- (과세표준) 현행 운영사항을 명문화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장부 등 작성) 개정 규정은 '24.4.1.* 이후부터 작성 의무 적용
 - * 법에서 위임(비용 지급 주체, 장부의 종류 등)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마련을 위해 시행일을 별도로 규정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u>다만, 제</u> 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
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	세표준) ①
(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	
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	
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	
하기 위하여 <u>거래 상대방</u> 이나 제	<u>다음 각 호의 자가</u>
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u>거래 상대방</u>
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	
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u><각 호 신설></u>	<u>1. 납세의무자</u>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

개정 전	개정 후
	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
	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① 법인
은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	<u>라</u>
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후단 신	<u>이 경우</u>
<u>설></u>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증거서류를
	<u>포함하여야 한다.</u>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
	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
	<u>거서류</u>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
	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
	<u>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목적·용</u>
	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u>및 증거서류</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법§20)

Ⅱ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 (무상취득:증여, <u>부담부증여</u>)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개정내용

○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부담액과 그 외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증여의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개선

□ 적용요령

○ 현행 운영사항을 명문화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u>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	
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u>무상</u>	
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	로 인한 취득의
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	
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	
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	
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지방세법 시행령

유사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 산정기간 연장(영 § 14)

Ⅱ 개정개요

1

개정 전	개정 후
□ 무상취득(상속 제외)시 과세물건의	□ 유사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 과세
시가인정액이 없을 경우 과세물건과	표준 적용 취지*를 감안하여 산정
유사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기간 연장
과세표준으로 적용	* 거래가 적은 유형에 대한 효율적 운영
○ (산정기간) 취득일 전 6개월부터	○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일까지	
□ 감정가액의 부적정 가액 산정기준과	□ 감정가액에 대한 부적정 가액
유사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 산정	산정기준에서 유사 부동산 등의
조문이 상호 인용되어 혼란 발생	시가인정액은 제외
○ (부적정 가액 산정 기준)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유사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	

□ 개정내용

- 효율적인 시가인정액 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사 부동산에 대한 산정기간을 취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고·납부일까지로 연장
 - * (개정전) 취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고일까지
- 감정가액의 부적정 가액 산정 기준에서 유사 물건의 시가인정액을 제외하여 법령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
 - ※ 감정기액의 부적정 기액 산정은 당해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나, 유사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은 당해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함

【시가인정액 평가기간 및 적용순서】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감정가액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해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 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 기간의 판단 등) ① -----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 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 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 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 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 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 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개정 후 개정 전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 가표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시가 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 표준액 -----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 이상 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 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 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 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 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 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 략)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 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

개정 전 개정 후 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법 제4 ----- 위치, 종류 ----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 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 ----- 다른 부동 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 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 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 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 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 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 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한다)---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 정액으로 본다.

⑥・⑦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2 대물변제·양도담보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개선(영§18의4)

Ⅱ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대물변제와 양도담보를 통한 취득시	□ 대물변제와 양도담보를 통한 취득시
대물변제액 등이 과세표준	대물변제액 등이 과세표준
○ 대물변제액 등이 <u>시가인정액을</u>	○ 대물변제액 등이 <u>시가인정액을</u>
초과할 경우 시가인정액 한도 적용	초과할 경우 대물변제액 등 전체

□ 개정내용

- 대물변제와 양도담보를 통한 취득세 탈루 방지를 위해 **대물변제액 등이** 시가인정액보다 높을 경우에 과세표준을 대물변제액 등으로 하고,
- 대물변제액 등이 시가인정액보다 낮을 경우에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을 적용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 대물변제·양도담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시기) : 소유권이전등기일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대물변제 및 양도담보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4(유상·무상·원시취득의	제18조의4(유상・무상・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	
다.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	1
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	
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	
액으로 한다.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	가
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	
변제액이 <u>시가인정액을 초과</u>	<u>시가인정액보다</u>
<u>하는</u>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u>적은</u>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다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개정 전	개정 후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u>시가인정액을 초과</u>	<u>시가인정액보다 적</u>
<u>하는</u>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u> </u>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무상취득에 따른 계약해제 인정기간 연장(영 § 20)

1 개정개요

3

개정 전	개정 후
□ 무상취득(상속 제외) 후 등기·등록	□ 무상취득(상속 제외) 신고·납부기한
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장('22.1.1 시행)에 부합하도록 취득
계약해제 서류* 제출시 취득 미인정	미인정 기한도 연장
*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증증서 등 제출	
○ 취득일로부터 60일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개정내용

-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계약해제 인정*기간**을 무상승계취득 취득일과 동일('22.1.1. 시행)하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연장
 - *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증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등의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4.1.1. 이전에 무상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무상취득 등으로 보지 않는 계약해제 기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무상취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	
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	
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 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	1
에서 취득일부터 <u>60일</u> 이내에	<u>취득일이 속하는</u>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	2
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u>60일</u>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당한다)	<u> 3개월</u>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3
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u>60일</u> 이	<u>취득일이</u>
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⑭ (생 략)	③ ~ ⑭ (현행과 같음)

4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 시 계약해제 인정 요건 추가(영§20)

Ⅱ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유상승계취득 취득의 시기 관련 □ 유상승계취득 취득의 시기 관련 ○ (취득일) <u>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u> ○ (취득일) <u>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u> 원칙으로 하되, 이를 알 수 없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적용 없는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적용 ○ **(계약해제)** 계약상의 잔급지급일을 ○ (계약해제)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유상승계취득 시 등기・등록하지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에만 등기 · | 않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 서류* 제출 시 계약해제 서류를 제출 하면 취득 취득 미인정 미인정 *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증증서 등 제출

□ 개정내용

- 사실상·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를 경우 취득자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적용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입증서류를 취득세 신고서(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의 첨부서류로 추가
- 취득의 시기 중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제 인정^{*}요건이 적용되도록 규정
 - *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증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등의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적용요령

- (취득일) 개정 규정은 '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계약해제) 개정 규정은 '24.1.1. 이전에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무상취득 등으로 보지 않는 계약해제 기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②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생 략)

- 1. ~ 3. (생략)
-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 으로 본다.
-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 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u>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u> <u>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u>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개정안 과 동일)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 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 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 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1. 화해조서 · 인낙조서(해당 조서 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 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 당한다)
-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개정 전	개정 후
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	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
은 것만 해당한다)	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	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u>당한다)</u>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	<u>한다)</u>
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	
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	
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⑭ (생 략)	③ ~ ⑭ (현행과 같음)

5 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규정 정비(영§28, §28의2, §34, §111)

Ⅱ 개정개요

개정 후
] 별장 관련 규정 정비 및 농어촌주택
규정 이관(제11호 신설)

□ 개정내용

○ 별장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23.3.14.)됨에 따라, 시행령 상 별장 관련 표현 정비 및 농어촌주택 관련 규정 이관

□ 적용요령

○ 별장 규정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로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	준) ①
분 전단에 따른 <u>별장 등</u> 을 구분하	<u>골프장 등</u>
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u>별</u>	골프
<u>장·골프장</u> ·고급주택·고급오락	<u> 장</u>
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	
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	
득하는 경우로 한다.	<u>.</u>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u><삭 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	
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u>말한다.</u>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	
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	
<u>미터 이내일 것</u>	
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	
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u>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u>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	

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

 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

 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허가구역
-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③ 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삭 제>

개정 전 개정 후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 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 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 장으로 본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세의 예외)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 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 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생략) 8. (개정안과 같음) 가.・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9. • 10. (생략) 9. • 10. (현행과 같음) 11. 제2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농 택 어촌주택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 에 있을 것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

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

개정 전	개정 후
	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
	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u>가액을 말한다)이 6천500만원</u>
	이내일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
	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
	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
	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u>한다.</u>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
	0조에 따른 허가구역
	<u>3) 「소득세법」 제104조의2</u>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
	관이 지정하는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개정 후 개정 전 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 라 정하는 지역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 납부) -----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5.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 기. -----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 고급주택-----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 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나 고 ----- 고급주택-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나. ~ 라. (생 략)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 거하는 것을 말한다.

멸실 목적 주택 취득 중과세 배제 보완(영§28의2)

Ⅱ 개정개요

6

개정 전	개정 후
□ 법인의 멸실목적 주택 취득시 중과세 제외 요건	□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택 신축판매업자 외 다른 취득 주체에 대해서도 신축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
○ (멸실 + 신축·판매) 주택신축판매업	○ (멸실 + 신축) 모든 취득 주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 (멸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도시 정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 시행자, 「소규모주택정비법」제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 조합,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 미분양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매 조건은 제외

□ 개정내용

○ 멸실 목적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 중 **주택신축판매업자** 外 다른 취득 주체에 대해서도 신축 요건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사업종류 취득 주체		추징요건	<u>!</u>
사업종류			신축판매 (개정전)	신축판매 (개정후)
공익사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년	-	
주택건설사업	「도시정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년	_	
	「소규모주택정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년	-	
	「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 포함)	3년	_	4년 (신축요건만)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3년	_	
	「민간임대주택법」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2년	_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1년	3년	3년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4.1.1. 이후 멸실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같은 호 나목6) 외의 개정사항만 해당한다] 은 이 영 시행 이후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세의 예외)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	
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	
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8
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	
으로 취득하는 주택. <u>다만, 나목</u>	<u>다만, 나목</u>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개정 전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열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나. (생 략)

9. • 10. (생략)

11. (생략)

12. ~ 15. (생 략)

가. • 나. (생 략)

9. • 10. (생략)

개정 후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 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 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 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 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 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 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 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 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 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 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 외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9. • 10. (현행과 같음)

11. (개정안과 같음)

12. ~ 15.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9. • 10. (현행과 같음)

지방세법 시행규칙

1 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정비(별지 제3호서식 부표)

Ⅱ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별장 중과세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 별장 관련 문언 삭제
시행규칙상 여전히 별장 규정 존재	

□ 개정내용

○ 별장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23.3.14.)됨에 따라, 시행규칙 서식 상 **별장 관련 표현 정비**

□ 적용요령

○ 별장 규정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로서, '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 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 <개정 2020. 8. 18.>

(앞쪽)

주택([]무상/[]유상거래)취득 상세 명세서

① 주택 (증여자[] / 취득자[]) 세대 현황												
① 취득자 구분 □ 개인 □ 법인 또는 단체												
② 세대 현황 ※ 무상취득은 기준으로, 위 취득자 기준	황 증여자 구상거래는	구 분 A 세대주 세대원	ᅦ대주의		라계	성명		·번호(외·	국인등록번:		배 포함 [함 [다함 [제외 제외 제외
적습니다.			□ 포함 □ 포함									
② 신규 취득 주택 현황												
③ 취득 주택			주 E정대	소 상지역) 	□ 부	고;	급주택	□ 여		부
④ 중과세 저	∥외 주택	여부	□ 해당	없음		해당 (「	지방세법 시험	행령」제	데28조의2	2제()	호의 주	택)
⑤ 취득 원인	<u> </u>		□ 무상	취득	/ 유	상거래 ((<u> </u>	분양권에	의한 취	득)		
<u>⑥</u> 계약일						7	취득일					
8 취득 가 ²	 격					<u>'</u>						
⑨ 취득주택 면적(m²)	총면적	토 지 건 물			취득	·지분	9	─ 취득	특면적├─	. 지 물		
⑩ 일시적 2	주택 여부		□ 일	시적	2주택	[□ 해당 없음	<u>)</u>				
 ③ 1세대	소유주틱	백 현황	※ 수	l규로	취득히	나는 주	 택을 포함합	·니다.				
			주택		시적 :		□ 2주택	□ 3	주택 [] 4주택		
		Ĥ	. 형		소유제	4	소재지 주	소	취득위		택 수 포함 여	
⑪ 1세대	소유주택 현황	단독 •	공동주	택 -							포함 [포함 [<u>제외</u> 제외
소유주택		'20.8.12									포함 [제외
현황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이후 계약									포함 [제외
	별지로 작	'20.8.12	주기 오피								포함 [포함 [<u>제외</u> 제외
	성할 수 있 습니다.	이후 취득	- - - 조합	합원							포함 [기
. [=] HL (HJ	시흥[라	TI 00 7 01 4	입주		N OLL	=1, 101	ᆀᄗᄓ	테이 조			포함 [
*「지방세법				각 오늘	4 어느	아나에	해당하는 수	<u> 역은 수</u>	덱 구 산	성 시 세.	외압니니	t.
④ 신규 주	두택 적용	용 취득서	율									
취득구분	중과세 7	제외 주택	두	P상취·	득			<u> </u>	<u>상거래</u> 개인			
규제구분	무상	유상	조정대		조정대 상지역	법인 및	조정	대상지역		조정디	#상지의 지역	ᅾ 외
총 소 유주 택 수 (신규 주택 포함		거래	3억 이상	3억 미만	외 지역	단체	1주택 알점 2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4주택 이상
① 취득세율	3.5%	1~3%	12%	3.	5%	12%	1~3%	8%	12%	1~3%	8%	12%
고급주택]	세윤어	<u> </u> 8%	가사					
				y 17 7	ı · · 2 · ·	1 0 /0	<u> </u>					

※ 향후 세대별 주택 수 확인 결과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人	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1. "① 취득자 구분"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 취득자가 개인인지 법인(「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을 말합니다)인지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 2. "② 세대 현황"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합니다)으로 구성된 세대의 현황을 적습니다. 이 경우다음 기준에 유의하여 적어야 합니다.
 - 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 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세대원란에 적어야 하는 대상
 - 1)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혼인했거나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다만, 미성년자가 아니면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 2)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부모
 - 나.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아. 세대원란에는 적지만 1세대 포함 여부에는 제외하는 경우
 - 1)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동거봉양(同 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퍼센트 이상인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 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3. "③ 취득 주택 소재지 및 고급주택 여부"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주소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고급주택 여부 를 적습니다.
- 4. "④ 중과세 제외 주택"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중과세 제외 주택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규정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적습 니다.
- 5. "⑤ 취득 원인"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취득 원인이 무상취득 또는 유상거래(매매 또는 분양권에 의한 취득)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 6. "⑥ 계약일"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증여계약일, 매매계약일 또는 분양권 계약일을 적습니다.
- 7. "① 취득일"란에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계약일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부동산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 8. "⑧ 취득 가격"란에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구입가격을 적습니다.
- 9. "⑨ 취득주택 면적"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토지・건물의 총면적, 취득지분 및 취득면적을 적습니다.
- 10. "⑩ 일시적 2주택 여부"란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로서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고 대상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과 신고 대상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란에 표기합니다.
- 11. "⑪ 1세대 소유주택 현황"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신고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단독·공동주택, 2020.8.12.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 2020.8.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자, 소재지 주소와 취득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 소유주택 현황을 별지로 작성할 경우 유형, 소유자, 소재지 주소, 취득일 및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12. "⑫ 취득세율"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중과세 제외 여부, 취득 원인, 소재지(조정 대상 지역 여부) 및 1세 대 소유주택 수 등을 확인하여 해당 세율을 표기합니다.



Ⅱ. 등록면허세(등록분) 개정내용

지방세법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법§26)

Ⅱ 개정개요

1

개정 전	개정 후				
□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 다만,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				
및 출자전환의 경우 비과세 제외	등기는 예외없이 비과세				

□ 개정내용

- 파산, 회생절차 상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 중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의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비과세
 - ※「채무자회생법」상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을 삭제하는「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23.11.13.)되어 추후 심사 예정
 -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회생법인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율>

구분	'16년 이전	'16년~'23년	′24.1.1. 이후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 등기 등록 中 자본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	비과세	과세 (^{상사영리} 0.4%, ^{비영리} 0.2%)	비과세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 등기 등록 中 회생계획인가·취소, 회생절차개시·종결, 보전처분 등		비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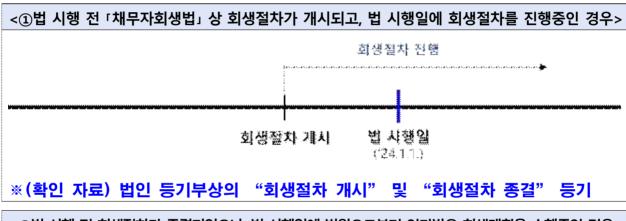
- 기업의 원활한 회생 지원을 위해 이 법 시행 이전에 법원 촉탁 및 등기소 직권 등기·등록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면허세 비과세 적용
 - * ①(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②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있었으나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간이)회생계획을 수행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4년 1월 1일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①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②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u>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u>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u>이거나 <u>회생계획·간이회생</u>계획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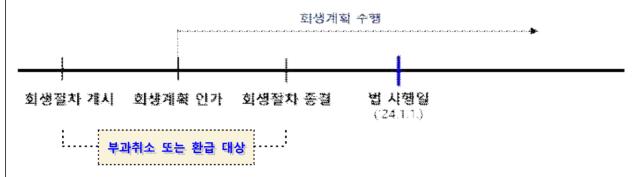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당초 회생계획보다 조기에 회생계획을 완료한 경우 기존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과세

※(유의사항) 회생기업이 법원으로부터 <u>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이후 회생</u> 계획에 따라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 등이 발생한 경우 등기·등록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 <u>법원 촉탁, 등기소 직권 등기·등록에</u>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등록면허세를 과세해야 함

참고자료 기타 고려사항

□ (부과취소 또는 환급대상) 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하는 등기·등록 중 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등록에 대해 과세한 등록면허세(등록분)



- □ (지방세환급가산금) 법령 시행일 다음날인 '24.1.2.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 (또는 충당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
 - * 연 2.9%('24.1.1. 기준, 「국세기본법」영 §43의3② 및 규칙§19의3)
 - ※ 환급기산금 기산일: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다음날(「지방세기본법 시행령」 §43①4)

②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비과세) ① (생 략)	제26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②
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	
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제1항
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	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u>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제</u>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4항, 제362조제3항, 제578조의5
은 제외한다.	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
	8조의9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u>등록</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법무부 소관)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제25조(등기소의 직무) ① ~ ③
<u>면제)</u>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u><삭 제></u>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부인의 등기) ① (생 략)	제26조(부인의 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u><삭 제></u>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	
<u> 니한다.</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2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 및 보완(법§27)

Ⅱ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	□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
○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을	○ '취득세 부과제척 기간이
과세표준으로 적용 [*] 하는 경우	경과한 경우'는 <u>취득 당시</u>
규정	<u>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u>
* ①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	<u>높은 금액</u> 을 과세표준으로 함
②외국인 소유 차량·기계장비·항공기	
·선박의 연부취득, ③ <u>취득세 부과제척</u>	
<u>기간이 경과한 경우</u> , ④면세점 이하 물건	

□ 개정내용

- **취득세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나, 등록이 필요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경우,
- 기간 경과에 따른 재산 가치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 ※ (사례) 사망 당시 주택가격('11년 1억원), 등록 당시 주택가격('23년 10억원)일 경우,<개정전> 취득 당시 과세표준 1억원 → <개정후> 등록 당시 과세표준 10억원

□ 적용요령

○ 개정 규정은 '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u>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과세표준) ①・② (생 략)	제27조(과세표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	③
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u>제10</u> 조의2부터	<u>다음 각 호의</u>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u> 구분에 따른 가액</u>
<u>취득당시가액</u> 을 과세표준으로 한	
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	
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	
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u><각 호 신설></u>	1. 제23조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
	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
	0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2. 제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
	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
	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
	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
	<u>가액 중 높은 가액</u>

- 52 -	
--------	--

Ⅲ. 등록면허세(면허분) 개정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1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변경** (영§39 관련 별표1)

Ⅱ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에 대해 과세	□ 근거 법령 제·개정 사항 등 반영
○ 과세대상 : 총 960개	○ 과세대상 : 총 962개
-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	- 신설 2개, 개정 4개

□ 개정내용

- 면허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과세 대상^{*} 발굴**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선박안전법」제24조의2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면허명·인용조문 수정
 - * (종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rightarrow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 행정청의 행위 명확화 등 **기존 과세대상 정비**
 - * (종전)「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 → (개정)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신고의 경우에는 선용품공급업만 해당한다)

□ 적용요령

○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개정조문(영 별표1)

○ 신설(2개) : 제2종(2)

면허명	면허 구분	면허종별		ᆌ저저	게저ㅎ	게저 사이
전여경	구분	종	호	개정전	개정후 	개정 사유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선박안전법」)	등록	2	206	<u>신설</u>	「선박안전법」제24조의2에따른 컨테이너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법 개정 ('22.12.27.)
안전성검사기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지정	2	207	<u>신설</u>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법 개정 ('22.10.18.)

○ 종별 정정(명칭 변경, 용어 정비)

- 4개 : 제1종(1), 제2종(1), 제3종(2)

면허명	면허면허용별		동별	개정전	개정후	개정
549	구분 종 호 개정선 기정		/∥o÷	사유		
동물원 및 수족관의		1	23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u>제3조</u> 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u>등록</u> . 다만, <u>보유한 동물</u> (수족관의 경우 생물)의 <u>종이 70종 이상인 것만</u> 해당한다.	에 관한 법률」 <u>제8조</u> 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u>허가</u> . 다만, <u>보유동물의</u> 종이 70종 이상인 동물원	법 개정
허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	2	19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u>제3조</u> 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u>등록</u> . 다만, <u>보유한 동물</u> (수족관의 경우 생물)의 종이 40종 이상 70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u>허가</u> . 다만, <u>보유동물의</u> 종이 70종 미만인 동물원	('22.12.12.) ※'23.12.14. 시행

대시대	면허			계정정	ᄁᄸᅌ	개정
면허명	구분	종	호	개정전	개정후	사유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	3	25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u>제3조</u> 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u>등록</u> . 다만, <u>보유한 동물(수족관의 경우 생물)의 종이 40종 미만인 것만</u> 해당한다.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u>허가</u> . 다만, <u>보유동물의</u> 종이 70종 미만인 동물원	
항만운송관련사업 의 등록 (「항만운송사업법」)	등록	3	90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 사업의 <u>등록</u>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 사업의 <u>등록 및 신고(신고</u> 의 경우에는 선용품공급 업만 해당한다)	용어 정비

지방세법 시행규칙

1 법령 개정에 따른 고지서 서식 보완 (별지 제17호서식)

Ⅱ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세 고지서 상 가산금 중가산금	□ 지방세 고지서 상 가산금·중가산금
명칭 사용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지방세징수법」제30조·31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규정이 삭제되어「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20.12.29.개정, '24.1.1.시행)

□ 개정내용

○「지방세법 시행규칙」서식의 가산금·중가산금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현 행		개 정		
「지방세징	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 규정 폐지	「지방	네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가산금	(§30) 납부기한 경과 시 3% (1회)		(§55①3)납부기한 경과 시 3% (1회)	
1	(§31)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 초과시 <u>0.75%</u> (최대 60회) ※ 본세액 <u>30만원</u> 이상 적용	납부지연 가산세	(§55①4) 매 1개월 초과시 <u>0.66%(</u> 최대 60회) (§55④) 본세액 <u>45만원</u> 이상 적용	

□ 적용요령

○ 20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비코드 18mn 음성변환용(외부) 과세번호 받는 사람 담당자 문의처 우편반송용 바코드 17mm 우편반송용 과 세 근 거 비코드 18mm 납 부 장 소 음성변환용(대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미울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가부과되고,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그 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로부과되니다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부과됩니다. ※ 계산식 ▲ 기교격
 납기 내 지방세액 + 납부지연
 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 × 0.66% × 경과월수) 수납은행 V (우리는) 확인용, 분)(납세자용) 시 시·군 , 시·군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세번호 세목 기관번호 납세 쟈 납세지번호: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주 소: 전지납부 수납용 바코드 과세대상: 수납용 <u>납기</u>내: 까지 납기 내 금액 납기 내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까지 납기 후 한 계 까지 납기 후: 납기 후 까지 합 계 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답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월 일 월 일 수납은행용 녀 년 직인 바코드 단체의 장 전자납부 직인 수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납용

유의사항

1. 지방세액 산출근거

과세근거	■「지방세법」제23조제2호, 제24조제2호 및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제24조제2호에 따른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CP지 90g/m²)

-	66	-
---	----	---

Ⅳ. 담배소비세 개정내용

지방세법

1 │ 담배소비세 납세지 명확화 (법 §50)

Ⅱ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담배소비세의 납세지	□ 담배소비세의 납세지 명확화
○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 국내로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 개정내용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납세지를 **실질적**으로 담배를 유통시킨 **개인**의 주소지(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로 변경

< 담배소비세 조문 정비 배경 >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의 의미가 모호하여 유권해석 상 '세관 소재 자치단체'에서 부과
- ■이로 인해 세관이 소재한 특정 자치단체에만 고액의 체납액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 행안부 유권해석 (지방세법규심사위원회 결정, 2020.9.2.)

수입업자는「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아 「지방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납세지는「지방세법」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를 세관 소재 자치단체로 봄

□ 적용요령

○ 개정안 시행일 이후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납세지) ①・② (생 략)	제50조(납세지)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③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2
국내로 <u>반입하는 장소</u>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
	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
	<u>소 소재지)</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시 특별징수의무자규정 신설(법 § 62의2)

Ⅱ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사유 발생시 지자체장이 각각 부과· 징수 ○ 비정상적인 방법(불법·허위신고) 으로 제조· 반입한 경우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사유 발생시 특별징수의무자가 부과· 징수 ○ (좌 동)
- 개별지자체에서 부과·징수	- 특별징수의무자가 부과·징수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담배 소비세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개별 지자체에 납입

□ 개정내용

- 담배를 비정상적인 방법(불법·허위신고 등)으로 제조·반입한 경우 과세권자인 개별지자체(166개)가 부과·징수하여야 함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사유 발생시 부과·징수를 위해 과세권자인 특·광역시, 시·군(166개)이 각각 부과·징수하여 행정력*이 낭비
 - ※ 개별지자체가 부과함으로써 다수의 고지 비용이 발생하고, 납세자가 불복할 경우 자치단체 별로 체납징수업무 및 개별 소송 대응하는 등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
 - 납세의무자 역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거나 불복 제기 시 과세권자인 특·광역시, 시·군(166개)을 상대로 납부, 소송제기 시 불편 초래
- ⇒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시부과 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세액을 특별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u><신 설></u>	제62조의2(특별징수) ① 제61조제1
	<u>항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u>
	<u>항제3호·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u>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
	여 세액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는 제6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
	고 해당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부과
	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할 담
	배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
	<u>다)로 한다.</u>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 전단
	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를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
	무자는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
	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개정 전	개정 후
	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
	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
	<u>다.</u>
	③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였
	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
	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해당 특별징
	수의무자에게는「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u>아니한다.</u>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담배소비세
	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불복하려
	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u> 처분청으로 본다.</u>



∨. 지방소득세 개정내용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법§103의23④, §103의37⑤)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분할납부 제도 없음 (납부기한 내 전액 일시 납부)	○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 시,1개월 이내 분납 가능(중소기업은 2개월)

□ 개정 내용

- 기업 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 신설**
 - 분할납부 금액은 국세(1천만원)의 10% 수준으로 설정*(1백만원)하고, 분할납부 기간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1개월(중소기업 2개월)로 설정
 - *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액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

□ 적용 요령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4년 신고분)부터 적용(부칙 제6조, 제8조)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 정신고와 납부) ① ~ ③ (생 략)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 정신고와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 백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u>④</u> ~ <u>⑦</u> (생 략)	<u>⑤</u> ~ <u>⑧</u>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 지와 같음)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 부)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 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5개월 이내에 제103조의34 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과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결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 부)①

개정 전	개정 후
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제103조의23제4항</u>	<u>제103조의23제5항</u>
을 준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제4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
	백만원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
	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
	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
	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
	할납부할 수 있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참고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 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 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② (생 략)
-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 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 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 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생략)
 - 1. (생 략)
 -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 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4조
 - 3. ~ 7.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납부)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 하의 금액

2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시 가산세 감경(법§103의24⑥)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안분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 안분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u>무신고가산세</u> 부과	신고한 경우 <u>가산세율 경감</u>
○ 납부할 세액의 <u>20%</u>	○ 납부할 세액의 <u>10%</u>

□ 개정 내용

-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 성실히 안분신고한 경우와 신고세액의 합계가 같고, 안분만 하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 무신고(20%)보다는 완화된 가산세 적용 필요
 - ⇒ 현행 무신고가산세율에서 **50% 감경**한 가산세 적용(20% → **10%**)

< 적용 예시 >

•OO법인이 안분신고하지 않고 본점인 A시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구분	정당한	신고한	결	과
丁正	세액	세액	개정전	개정후
A시	300	600	300 환급 (환급가산금 X)	300 환급 (환급가산금 X)
В시	200	0	200 납부 + 가산세 40 (200× 20%)	200 납부 + 가산세 <u>20</u> (200× <u>10%</u>)
C군	100	0	100 납부 + 가산세 20 (100× 20%)	100 납부 + 가산세 <u>10</u> (100× <u>10%</u>)

⇒ <mark>가산세율 50% 감경되어 **가산세 부담 완화**(가산세액 합계: ^{개정전}60→^{개정후}30)</mark>

□ 적용 요령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7조)

참고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 ⑤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	6
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	
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	
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	
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법인	
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	
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후단 신설>	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
	라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
	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금액은 같은 항에
	따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참고2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u>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u> 이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u>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u>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u>과소신고한 납부세액</u>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 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2.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 고한 경우
 -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 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④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 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u>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u> 그 법인에 대해서는 <u>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u>, 제4항을 적용한다.
 - ①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납부 및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신설(법§103의37⑦)

□ 개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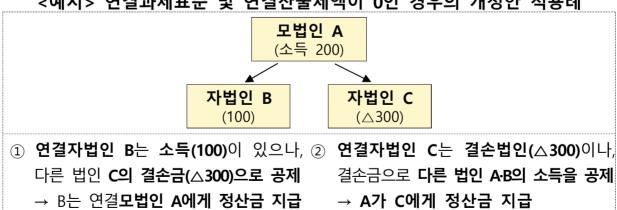
※ '23년 국세 동반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 연결법인별 세액 배분(정산) 근거 일부 불비	□ 연결법인별 세액 배분(정산) 근거 마련
○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연결법인간 세액 정산 불가	○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의 소득·결손금에 비례하여 세액 정산 ※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시행령에 규정

□ 개정 내용

- 연결산출세액이 없어도 소득·결손금 크기에 따라 연결모·자법인 간 정산하는 경우(국세 개정사항), 지방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정산 근거 마련
 - 정산의무자(법인)는 **「법인세법」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는 법인**으로 하되, 정산금 계산방식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별도 규정 예정

<예시>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이 0인 경우의 개정안 적용례



□ 적용 요령

○ '24.1.1.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부칙 제8조)

참고 개정 조문

□ 기하게ᆏ

대정 전	□ 지방세법	
법률 ① ~ ⑥ (생 략) ② 제103조의35제1항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 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 다. 1.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개정 전	개정 후
① ~ ⑥ (생 략) (신 설> ⑦ 제103조의35제1항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 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 다. 1.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신 설) (7) 제103조의35제1항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 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률	법률
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 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 다. 1.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① ~ ⑥ (생 략)	① ~ ⑥ (생 략)
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 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 모법인에 지급 2.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신 설>	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
	법인에 지급
<u>⑥</u> ~ <u>⑧</u> (생 략)	⑧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
	지와 같음)

4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조문 정비** (법§103의52)

□ 개정개요

※ 국세 동반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또는 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국세 준용	○ (현행과 같음)
-「법인세법」제98조부터 제98조의7까지	-「법인세법」제98조부터 <u>제98조의8</u> 까지

□ 개정 내용

○ (국세개정) **외국인 통합계좌**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일괄원천 징수 하는 등의 특례를 신설(「법인세법」개정안 제98조의8)

< 국세 개정내용 > -

- · (개념) 외국인 통합계좌란 **다수투자자의 매매를 통합 처리**하는 계좌
- (개정내용) 외국인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 식별 및 과세에 한계가 있어 원천징수 의무자는 그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 일괄원천징수 하고,
 -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정청**구토록 함
-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준용조문에 신설된 「법인세법」 개정조항 추가
 - ※ 비거주자인 개인투자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조치 없어도 해당 특례 자동 적용 가능(「지방세법」§103의13)

□ 적용 요령

○ '24.1.1. 이후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칙 제10조)

개정 조문

개정 정 개정 후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 |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 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 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 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의2부터 제98조의8까지-----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 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 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 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 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7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 까지를 준용한다. 부터 제98조의8까지의 규정을 ---

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법 §103의53·§103의54)

□ 개정개요

※ 국세 동반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 동업기업 과세특례
납세의무	적용대상 확대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 (현행과 같음)
적용받는 동업기업은	
납세의무 없음	
<신 설>	- 동업기업의 자격을 갖는
	동업자*는 납세의무 없음
	*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
○ (동업자) 동업기업의	○ (현행과 같음)
동업자는 납세의무 있음	

□ 개정 내용

-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사모펀드)인 경우,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는 동업기업으로서 과세특례 적용(국세개정)
 -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사모펀드가 모펀드로서 다른 자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모펀드는 동업기업인 동시에 동업자에 해당
- 국세 개정안과 연계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범위***를 확대
 - * nd 동업기업 \rightarrow nd 동업기업 + 동업기업의 동업자인 기관전용 사모펀드
 - ※ 모펀드·자펀드가 모두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

□ 적용 요령

○ '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부칙 제11조)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조세특례제한법」	납세의무) ① <u>「조세특례제한법」</u>
<u>제100조의15제1항</u> 에 따라 동업기	<u>제100조의15제1항 및 제2항</u>
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	
(이하 "동업기업"이라 한다)과 동	
업자(이하 "동업자"라 한다) 중 동	
업자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	
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	
며, 같은 법 제100조의16제3항에	
따른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같은	
조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	
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준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①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①
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u>종료일</u>	<u>종료일</u>
<u>에 동업자</u>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개정 전	개정 후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	
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②
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u>제</u>	<u>제1</u>
<u>2항</u> 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	<u> </u>
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	
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	
에 가산한다.	

6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 법 § 103조의61)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가산세 적용 특례	□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21년, '22년 과세기간 발생	○ '21년부터 '24년까지의 각
소득에 대해	과세기간 발생 소득에 대해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확정	- (좌 동)
신고를 한 납세자의 경우	
- 1개월이내 지방소득세를 수	- (좌 동)
정신고, 기한후 신고하면 과	
소신고, 무신고가산세 면제	

□ 개정내용

○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국세인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년)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기한후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개정조문

□ 지방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2021년 과세기간 및 2022년 과	②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
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	
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	
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	
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	
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	
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1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규정 마련(영 §103의13③·§103의25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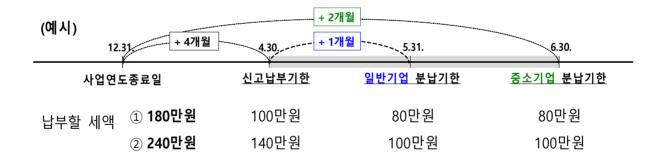
□ 개정개요

※ '23년 법률 개정 후속조치

개정 전	개정 후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없음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방법 규정 신설

□ 개정 내용

-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규정
 - ^①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②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적용 요령

○ '2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부터 적용

개정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② (생 략)	신고 및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u> </u>	③ 법 제103조의23제4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 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 부) ① ~ ③ (생 략)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 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03조의37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 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u>50 이하의 금액</u>

동업기업 과세특례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영 §100의31)

□ 개정개요

2

개정 전	개정 후
□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	□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손익배분비율 규정 보완
○ 동업자 간 약정에 따른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의17)	○ (현행과 같음)
	○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상위 동업 기업이 있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100의15②·③)
	=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 (하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 개정 내용

-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 규정 보완
 - (일반적인 손익배분비율) 손익배분비율은 ^①동업자 간 약정에 따르되, ^②약정이 없는 경우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름(「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100의17)
 - (다단계 구조의 손익배분비율) 동업자-상위 동업기업-하위 동업기업의 구조인 경우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과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출(「조세특례제한법」 §100의18⑤ 후단)

□ 적용 요령

○ '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지방세법」개정안 부칙 적용)

참고1 개정 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 제10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 제10
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u>3</u> 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 따른 손익배분비율은 「조세	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	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이란 다
에 따른 손익배분비율로 한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분 비율
	<u>을 말한다.</u>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제1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u>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u>
	<u>따른 손익배분비율</u>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u>1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업자</u>
	<u>의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18제5</u>
	항 후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u>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비율</u>

참고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3.9.1. 국회 제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생 략)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업
	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
	업에 출자한 동업자가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
	회사인 경우 그 투자합자회사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
	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
	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투자합자회
	사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
	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u>받을 수 없다.</u>
<u><신 설></u>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
	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
	<u>를 적용받는 자는 동업자의 자격</u>
	으로 자기가 출자한 동업기업(동
	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

	2 -2 .2
<u>현</u> 행	개 정 안
	<u>기업을 말한다)과의 관계에서 "상</u>
	위 동업기업"이라 하고, 그 출자
	<u>를 받은 동업기업은 상위 동업기</u>
	업과의 관계에서 "하위 동업기
	업"이라 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
	<u>다.</u>
② (생 략)	<u>④</u>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생 략)	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동업자</u> 는 제100조의18에 따라	②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	<u> 자는 제외한다)</u>
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
의 계산 및 배분) ①·② (생 략)	의 계산 및 배분)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하
	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
	손금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동
	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A × B × C A: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소득금 액 및 결손금 B: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 업의 손익배분비율 C: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손익배 분비율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u> </u>
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	
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 한다. <u>다만,</u>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	우 하위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각 호의 금액은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
	비율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비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	4
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u>대한 법</u>	<u>대한 법</u>
<u>인세</u>	인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
	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u> </u>
	<u> </u>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	
할 때 <u>제4항</u> 에 따라 배분받은 금	<u>제5항</u>
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	
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	
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	
산한다.	
<u>⑥</u> (생 략)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의 분배에 관한 단일의 비율로서 제100조의24에 따라 신고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에 따른 서식 정비(별지 제43호서식 등)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없음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	
○ 관련 서식에 분할납부란 없음	○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서식 변경	

○ 기존 서식에 '분납할세액' 란을 추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정비(총 5종)

구분	분 서식 내용				
1	별지 제43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별지 제43의2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별지 제43의6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4	별지 제44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5	별지 제44의2호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접수번호	바라며, 색상이 어두 접수일자				<u> </u>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	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u> </u> ⑧업태		9종목			⑩주업종코	.드	
<u> </u>	. ~	<u> </u>	⑫수시부과기	 간 .		~ .	
		·	14) 조 정	<u></u>	1. 외부 2	. 자기	<u></u>
	일반		IB의 브 가 샤대			 . 부	
(15) 종 류 별 구 분 <mark>중소</mark> 기업	중견 상호출자 그외	당기순이 ⁹ 과세	7		1. 정기신고		
		,					석, 나. 기타)
영리 법인 코스닥 상장법인 21 기 타 법 이 30	71 81 91 72 82 92		─⑪신 고	구 분	3. 기한후		
	73 83 93				4. 중도폐업	-	
<u>비 영 리 법 인</u> 60 ⑧법 인 유 형 별 구 분	74 84 94 코드	50	<u> </u>	정 일	5. 경정청구		
20년 고 일	<u> </u>		10월 전 목 20남 부	<u>영</u> 일			
<u> </u>	청 잌		2. 연장기한				
<u> </u>	여	부		구 분		0‡	부
	1	2	②장부전산화	<u>. </u>		1	2
②사업연도의제	1	2	26월 손금소급공	당제 환급신	·l 청	1	2
②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미환류소득에 대	H한 법인지빙	·소득세 신고	1	2
	밭	인별 세약					
구 분			법 인 지 방				
丁 正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	Ⅱ │ 토지 세 │ 대한	등 양도소득에 법인지방소득세	│ 미환듀 │ 법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u> </u>	계
29수 입 금 액	(<u></u>)		
③) 과 세 표 준					<u> </u>		
③ 표 준 산 출 세 액							
②총 부 담 세 액							
③3기 납 부 세 액							
③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③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36납 부 할 총 세 액(34+35)				4.51 JUQU/63	a)		
☞분 납 할 세 액		안분율의	®신고기간 이내 납투 Ⅰ 계시	구알 세액(3 <u>6</u>)	-(37)		
③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④ 해당사업장 명칭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소재지		() 특 • 광역시	시 주사업장 여 연락처		2. 부
④안분율의 계산		거 추 !	물 연면적(m²)				 안분율
^{수문} (명)	계	건물	기계경	당치	시설물		기 군 뀰 수점8자리)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MILUTH 시초네에	납	세지별 세	액의 계산	고리 기마	4 OII		
④ 납세지별 산출세액			④납세지별 세액		144		
45납세지별 가산세액			46납세지별 추가				
합계 무(과소) 납부지연 신고 납부지연	지방세법 동업기압 제103조의30에 가산세 따른 가산세 배분액	기타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 수시부과세약 예정신고납-			
			48 납세지별 경정	・수정신고	. 등 가감액		
④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⑨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서	네액		
⑤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⑩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5		네지에		
환급금 계좌 [3]금융기	관명			⑤ 예금주			
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55계좌번.	<u> </u>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	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	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	지에 따라 위	의 내용을 선	<u> </u>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		3확하게 직					(01)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서명	(인)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니

(뒤쪽)

		(. , , , ,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취묘기를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	
첨부서류	3. 버이지바소드세 과세표즈 및 세애조저게사서	구구교
(본점신고 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없 음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작성방법

- 1.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⑩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② 신고기<u>한 연장승인:</u>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②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②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 "란에 "○ "표시를 합니다.
 4. ②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 "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⑤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 "란에 "○ "표시를 합니다.
 6. ② 결소금소급공제 환급신청: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 및 별지 제43호의10서식) "를 제출하는 경우 "여 "란에 "○ "표시를 합니다.

- "○ "표시들 합니다.
 7. ②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 "란에 "○ "표시를 합니다.
 8. 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여 "란에 "○ "표시를 합니다.
 9. ② 수입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③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⑩란, ⑩란, ⑩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③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 "의 ⑩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⑩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⑩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충무되어액을 각각 석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라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 "의 ⑩란,⑭란 및 ⑭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라에는 동 서식의 ⑭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라에는 동 서식의 ⑭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라에는 동 서식의 ⑭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라에는 "법인지방소득세라에는 "법인지방소득세라에는 "법인지방소득세라에는 "법인지방소득세라에는 "법인지방소득세라에는 "법인지방소득세라에는 등 서식의 ⑭란의 금액을 가고 적습니다. ⑩ 라의 금액을 가고 적습니다. 웹 가는 바라에는 당 세식의 ⑭란의 금액을 가고 적습니다. 웹 가는 바라에는 당 세식의 ⑭란의 금액을 가고 적습니다. 웹 가는 바라에는 당 세식의 ⑭란의 금액을 가고 적습니다. 웹 가는 바라에는 당 세식의 ⑭란의 금액을 가고 적습니다. 웹 가는 바라에는 당 세식의 덴란 바라의 함께 되었다면 당 베라의 함께 되었다면 당 바라의 함께 되었다면 당 베라의 함께 되었다면 당 베라의 함께 되었다면 당 바라의 함께 되었다면 당 베라의 함께 되었다면 당 바라의 함께 되었다면 당 바
- ®단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③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 "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⑩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⑪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⑤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⑩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⑤ 본답할 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⑩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⑤ 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 '○'표시를 하며, ④ 투・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 '란에 '○'표시를 합니다.
- 15.
- 16.
- 17.
- 18. 42 안분율의 계산
 - [2] 안문 물의 게전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시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시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 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음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0 이상 1 이하)을 적습니다.

-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 있습니다.
 19. ⑥ 납세지별 산출세액: ⑥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에 ⑩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0. ⑭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21. ⑥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기산세액을 적습니다.
 22. ⑩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 "의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세액란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৷৷ ৷ | 명한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① 세백단의 압계급액 ᆾ 이로마 보고 요요.
 23. ④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 총부담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 - 지점의 특별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24. ⑧ 납세지별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⑤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에 ⑩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5. ⑪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⑤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⑥ 납세지별 산출세액 ④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 ⑥ 납세지별 가산세액 + ⑥ 납세지별 축가납부세액 ⑥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pm ⑥ 납세지별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pm ⑥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 27. ⑤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⑦ 분납할 세액에 ⑫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8.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⑥ 금융기관명 ~ ⑥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9.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두	· 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연	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	l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9	10 10 12-			
	T	4			
1.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5	- 11	웹 과 세 표 준 │ │ │	
				0	
과	① 비과세소득		다 =	🔞 세 율	
세			2	(39) 산 출 세 액	
표	⑩ 소 득 공 제		>	(W) L: 2 *11 ¬	
	⑩,벏 인,세 과,세 푮 준		Ξ	🐠 감 면 세 액	
준		1		(4) 차 감 세 액 (® - Ma)	
계	⑤ 선 박 표 준 이 익		7	四个百八三(19)	
산		- O	HI	4 공 제 세 액	
_	⑩ 외국법인세액조정액			(4)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① 법 인 세 과 세 표 준		-Ħ │	배분액 (기신세 제외)	
_	(1) + (3) + (b)	Ō	<u></u>	149 가 산 세 액	
2.	⑩ 외국법인세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산	⑩ 과세 표 준(⑩ - ⑯)	L		40 -1 71-11(0 · 0 · 0)	
출	① M B		인 [⑩ 가 감 계(⑩ + ⑭ + ⑭)	
세	① 산 출 세 액		- 1	기 ⑭ 수 시 부 과 세 액	
	⑩ 지점유보소 득		구.	기 (4) 수 시 무 과 세 액	
액	(「법인세법」 제96조)			부세 ()세액	
계	⑪ 지점유보소 득에 대한		OII		
산	법인세 산출세액 ③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세 [액 🖟 계 (46 + 40)	
_	⑩ 합신시청소득세 건물세획 ⑪ 합 계(⑪ + ⑱)			40 -1 -7 +1 H -1 +1 011	
			11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⑧()	
	⑩ 산 출 세 액(⑩ = ⑩)		<u> </u>	(19)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5D) 미 환 류 소 득 에 대 한	
	공 제 감 면 세 액 ② 차 감 세 액	5		법 인 세	
	(2) 최저한세 적용제외	ā		⑤ 세 율	
3.	공제 감면 세액				
납	① 가 산 세 액		화금무소금~범=기	⑩ 산 출 세 액	
부	② 가 감 계(⑩ -⑩ - ⑫ + ⑭)	=	특 [4FD 71 A1 411 O11	
	⑩ 비영리내국법인의		벜 [NB 가 산 세 액	
할	기 예정신고세액			ⓑ 기 납 부 세 액	
	기 내 수 시 부 과 세 액		`	© - 1 L	
세		년 소 등 *	<u> </u>	® 이 자 상 당 액	
액	납 납 (2) 특결정구답구세역 보 부 (2)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	특 ⊦		
	해 액 130 소 계	\ \ \ \ \ \ \ \ \ \ \ \ \ \ \ \ \ \ \	네	(B) 차 감 납 부 할 세 액 (B) + (B) - (B) + (B)	
계			_		
산	③ 신고납부전가산세액 ② 합 계(③)+③)		- 1	⑩ 해 당 연 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③ 탄력세율적용조정세액			답 구 알 제 액 게	
	(3) 감면 분추가납부세액		6.	® 경정·수정신고등	
		\.\.\.\.\.\.\.\.\.\.\.\.\.\.\.\.\.\.\.	4	(18) + (18) + (18) (18) 경정 · 수정신고 등 가감액 (19)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	
	③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② - ③ ± ③ + ③)	<u>Q</u>		(5) 문답세액 계산 범위액 (15)-12)-13)-14)-15)+13)+13)	
	·			🕼 분 납 할 세 액	
			(⑩ 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	
				$(\sqrt{50} + \sqrt{35} - \sqrt{59})$	1 1 L

작성방법

- 1.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 법인세 과세표준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 2. 선박표준이익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표1의 "⑦ 선박표준이익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3. ⑩ 외국법인세액 조정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 4. ⑩ 외국법인세액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5. 세율란(ꂌ, ⑱, 慟):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 6. ⑩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⑪ 지점유보소득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7. ⑩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⑱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8. ⑩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50에 따라 "⑪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란의 금액의 10분의 1을 적습니다.
- 9. 🕲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에 따라 예정신고세액을 적습니다.
- 10. 🔞 탄력세율조정세액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감한 세액을 적습니다.
- 11. ③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 "의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12. ③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의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 13. 가산세액(⑭, ⑭, ⑯)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 14. 기납부세액계(웹), ⑭, ⑭)란: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15. ⑥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 16. 🔞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⑯ 이자상당액 "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 17. ⑱ 분납할 세액란: ՙ爾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	상방법을 참고하	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	!인이 적지 않습	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u></u> ①소 재	지					②전자-	 우편주소		
<u>③법 인</u>				④대표자성	 명				
⑤사업자	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분				<u>법</u> 인 지	<u> </u>		
	8이 자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	손 금 산 입 액							
과세표준	⑩기 부 금 :	손 금 산 입 액							
		도초과 이월액손 [:]							
계산		연 도 소 득 금 액	(8 - 9 - 10 - 11)						
	13비과세:								
	14과 세 표	준(⑫-⒀)							
	15세 율								
	16표 준 산								
	①가 산 세 역								
법인별	18가 감계(1								
нсе	기납부	19특별징수납부							
세액의	세액	,	세액						
계산		<u>ㅜ 할 제 핵(16) ~ (</u> !신고 등 가감액	וע						
	@상상 구경 24납 부 할 #								
	25분 납 할 /								
		<u>게 ㄱ</u> 기내 납부할 세액((24)-(25))						
	_	부 1.단일사업정		_ = 법인의 본	·점 3.지·	점 ②특・	광역시 주시업장 여부	1.0=	2.부
	②해당사업			소재지			연락처		
	③) 안분율								
	구분	종업원 수 (명)	계	<u>건</u> 조건물	등물 연면	석(m²) 계장치	시설물	안년 (소수점	분율
	법인전체		* II	22		1/11/0//1	.155	(10 ¹ / ₁ 0
납세지별	시군구내 비율(%)								
세액의	<u>미설(20)</u> ③합세지별	사추세애			⑩나세고	1벼 세애그	긍제 • 감면액		
	③답세지별						분 추가납부세액		
계산		과소(초과환급)	LIHTIO	3151	③남세지	별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신고	납부지연	기타	기납투	실세액	수시부과세액		
							수정신고 등 가감액		
③한력세율적용 조정세액						납부할 세액			
	③해당 납세	지에 분납할 세액			④ 신고기 납부혈	간 이내 할 세액(해당 납세지에 -③)		
 환 급	금 41금융	당기관명							
	42여								
	좌 43계	좌 번 호			-1 -1 -1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

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작성 방법

- 1. ①소재지 ~ ⑱비과세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 2. ⑭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 3. ⑤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 4. ⑯표준산출세액: ⑭과세표준에 ⑯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 5. ⑰가산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 6. ②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 1) 「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 2) 「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 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 3) 「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 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 4)「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 5)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
- 7. ②부납할 세액: 「지방세법」제103조의2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13제3항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 8. ②/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 '〇' 표시를 하며, 怒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②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적습니다.
- 9. ③ 아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 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 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0 이상 1 이하)을 적습니다.

-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
- 10. ③합네지별 산출세액: ⑥표준 산출세액에 ③한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11. ②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 12. ②상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13. 쥏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 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14. ③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은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액을 적습니다.
 - ·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 15. 添납세지별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②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에 ③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16. 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 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times$$
 표준세율 \times 안분율 \times $\left(\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text{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1\right)$

- 17. ③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③납세지별 산출세액 ②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 ③납세지별 가산세액 + ④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③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③납세지별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③단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18.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분납할 세액에 쥇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19.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⑪금융기관명 ~ 泌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20.「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연도 소득

초과 환급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	법을 읽고 ?	작성하여 주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5_	٨	사업연도 ·	~			
1. 가산세액	의 계산										
① 구	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u></u>	(2)	계산기준	<u> </u>	37	준 금액	④가산세율	<u> </u>	⑤가산시	세 액	
과소신고	일반	납부	납부(산출)세액				10(5)/100)			
파고인포	부당	납부	납부(산출)세액				40(20)/100)			
	일반	초고	초과환급세액				10(5)/100)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고	초과환급세액				40(20)/100)			
ı l H TI	74	(일수) 미납세액			()	22/100,000	0			
납부지역	<u>4</u>		(일수) 과환급세약	4	()	22/100,000				
기 티	ŀ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_	고지일 !	또는 납부일	<u></u> ! (.)	
2. 과소신고	납부(산출	출)세액 및	초과횐	├급 신 <u></u>	고세액	계산					
⑥ 구분	당초	천고	과소신	닌고 과서	네표준	②과세표	③납부 조 (산출)세액		고납부(· 액 -환급신고		
	①과세 표준	⑧납부 (산출)세액	9계 (⑪+⑪)	⑩부당	⑪일반	(7+9)	(⑫×세율 등)	(14)계 (13-8)	(15부당 (14×10/9)	16일반	
각 사업 과소											

작성방법

-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1.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 ①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당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⑯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⑭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을 초과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6개월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합니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 2.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 3. 기타란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 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의 작	성빙	법을	참.	고하시	- 기 바라미	1, 색싱	}o o	두운	칸은 선	<u> </u>	이 작	성하	지 읺	습니	라 .				(<u> 앞쪽)</u>
접수번호	호						접:	수일지	:}						관	리번호	2				
		①사	업자	등록	번호				(②법인등	-록번	호									
_	-		인명							4)전화t											
모법			<u>표자</u> 재지	성년	ජ ජ				(6전자	수면수:	<u> </u>									
해 !		<u> </u>							(9)연락치	:										
사 업			재지																		
===== ⑪연결시		 1도									일빈	·기업			(13)	조정구	- 구분				
Ŭ .		~				⑫법인	종류별	중: 기약		중견 기업	삵:	호출 데한	_	그외 기업]자기			
•	•	•	•	•		구-	분			기업	77	업	7	기업	_ L]11-	Τ []\[\]			
								30		73		3		93							
14년 고					1.	정기신고				가.서면	분석,	나.기				<u></u> 후 신		4. 경정	성청구		
⑤법인서	⑥법인세신고일 ⑥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 ①사업연도의제 []여 []부 연결집단별 세액의 계산																				
								`	선결합	1년일			I 산 지방:	수드	세						
구			분		각 9	년결사업 ⁽	여도의	수득	Ę Z	디들의			_			에 대	ēΙ		-1 -	11	
					에디	대한 법인	지방소	득세	대현	기 등 S 한 법인	지방소	흑세		법인	지방	스득세			합 7	1	
18 연 결			금	액			(ı)						
			표		_																
20 연 결		卢출		액																	
		<u>담</u> 부	세 세	액 액																	
②차 감				액																	
25납 부	할 총	·세	액(23)-	+24)																	
26분 남	납	할	세	액							신고기		내 납	부할.	세액(②	5-26)					
② 안분	-유									안분율	의계	산									
			업원 <i>=</i>	수		-11				축물											
구분	붙		(명)		1	계			건물			계장	<u> </u>	+		시설물	<u> </u>		안	분율	
법인명	\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년 율 (%	법인 전체	시군구	비율 (%)		I군구 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 구	비율 (%)		범인 전체	시군 구내		율 %)	(소수	점8자리)	
H L O	1	그제	Ч	(%) 전체	- 기	(/0)	체	-11	(/0)	건제	내	(/0)	ì	그제	7-41	(,	/0 /			
									납세	지별 /	네액의	계1	산								
② 연결	법인	별	납부						난서	지별 가신	·세액			납서	지별	난세지볔					
법인명 관	발계	벌일	ద범인	세	법인지방 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납세지별 세액공제 • 감면액	무		지방세법 제103조 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	71	납세지 별 추가 납부 세액		지별 부세액	납세지별 경정 • 수정 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 율적용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세액	해당	신고기간 이내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세액	본점
립인명 E	크게	법 인록 호 번	법인/ 연결법(산출서	백	연결법인빌 산출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감면액	무 (과소) 신고	납부 지연	의30에 따른	동업 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 타	구기 납부 세애	특별 징수 세액	수시 부과 세액	신고 - 등	조정세 액	납세시에 납부할세액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세액	납세지에 납부할세액	본점 소재지 시군구
										가산세	메正크		7117	~ ~	~11-7	가감액					
-1	-11																				
하고그게	T	e –	0-:	-1 = ·) all = =								_						<u> </u>
환급금계 시 그 이	_		용기: THE				<u>)예금주</u> 이 27		Гти	4 F 1/1 7	ᅵᆸᆔ			좌번 ㅜ ㄷ		테 [4 :	7 77 1	TIOI .	궈ᄭ	rrial (21 01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102	•																				
ЕШТ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트병지되시자 - 트병지되시자 - 트병지되었다. 시자 - 그스 - 그처자 기원																				
	<u>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u>																				
	ᄱᆑ					법인지								7 7 L \ .	ارد ا ۱ ۲	A171	اماما	이어 그=		수수료	
(연결. 본점신			2.									강태丑	-, (∄	노발) 1	<u> </u>	산서,	이익	잉여금처	I군	없음	
	본점신고 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포함) ^{따음}																				

신고안나

각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 1. ①사업자등록번호 ~ ⑦소재지, ⑪연결사업연도 ~ ⑯법인세신고일, ⑰사업연도의제 및 ⑱연결수입금액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 별시 세/6오리5지역의 작성당법을 운용하여 역급이다.
 2. 해당사업장란: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를 ⑧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란에 각각 적습니다.
 ※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
 3. ⑥법인지방소득세신고일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일을 적습니다.
- 4. ⑲연결과세표준의 법인지방소득세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⑭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짧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급..., 같은서식 ③5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5. ᠓연결산출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⑧란의 공역을 드로게 다 되는 다으로 게 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쪘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③한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②총부담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⑭가감계란의 금액 에서 ①라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⑩기감계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 서식 ⑩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급인시공조국에 단에는 붙는 시구 됐던데 마구를 ㅋㅋ 그리네요. 巡기납부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⑩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⑬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7. 22기납부세액란"

- - 하는 경우 하는 경우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 · 시중시합 (대로 제 15.55---는 경우 ·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 6분납할 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44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11. ②안분율란은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시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시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 항제공회 때는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 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0 이상 1 이하)을 적습니다.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2. 20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관계: 모법인은 "모", 자법인은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근게. 고리는는 그 , 자료는 자료 다 한에 가입하는 기업에 다 입에 가입하는 그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보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의 총액을 적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의 총액을 적습니다.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가산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이월과세액과 추가납부세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 특별징수납부세액: 모법인과 자법인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1)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 ·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총부담세액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2)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u>애궁 납에서의 중기 묘에</u>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 리는 트리크 그림이 나타 전에 그 그럴답한 전세의 독별정수납무세백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정수납부세액 합계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법인별 특별정수세액을 각 연결법인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4)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지별 수시부과세액을 적습니다.
 납세지별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②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에 ③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추가납부 세액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⑩분납할 세액에 ৷ 원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신고기간 이내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13.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⑩금융기관명 ~ 얇게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	번호	
		법	 인구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구분코드		연결				
			- · - 불법인명		집단				
			·등록번호		계				
		① 각 연	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	연도 결손금)					
	~	(2) 연 결 (각	』소 늑 개 여결사업여	별 귀 속 액 도 결손금배분액)					
	연결		이월결손						
	과세	(4) H		소 득					
	표준	⑤ 소득	공제액						
		(6) 법인	세 과세표	준 및 과세표준 개					
	계산		속액(②-③ 버이네애 3						
			법인세액 <i>2</i> 법인세액	<u> </u>					
고디어컨				- - - - - - - - - - - - - - - - - - -					
각 연결		① 세율							
시업연도의 소득에			산출세액						
고 득 에 대한	여결	9 연	결 세	율(⑧÷⑭)					
네인 법인지방		⑩ 연결		출세액(∰×⑨)					
소득세	산출			배상 공제감면세액					
エコハ	세액			네외 공제감면세액					
	및	⑬ 가신							
		14 가		0-11-12+13) ~ 71 dl 4 dl 04					
	납부			중간예납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할	기납부	기안내 <u>₩</u> 납부 ⑰						
		세액	—	소 계(⑮+⑯+⑰)					
	세액								
	계산		②D 합	계(⑧+⑨)					
			분 추가납부						
				액(④-②+①)					
		양도	② 등기자						
			<u> </u>	<u> </u>					
		25 비과							
토지등	Ē	26 과세 27 세율							
양도소득			산출세액						
8포포 대한	1 - 11	<u>29</u> 감면							
법인지방소	느득세								
		③ 가신							
		③ 가		8-29-30+31)					
		③ 기납							
			납부할 세						
			·류소득에 디	내한 법인세					
미환류소-	득에	③6 세율 ③7 산출							
대한		③ 건물 ③ 가신							
법인지방소	느득세	③ 이자							
			<u> </u>	+38+39)					
				액 계(②+③+④)					
		42 경정	· 수정신고	등 가감액					
세액겨	l	43 분납	·세액 계산 ②]-③]-③8+①	범위액 9+40) -	124 -				
			·할 세액	<i>ण</i> । (र्घ <i>म</i>)	124				
				부할 세액(④)+④-④)					

작성방법

1.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법인구분	모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코드	100	200	300

-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2.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⑥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 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 3. ④ 외국법인세액 조정액란: 「지방세법」제103조의34제2항, 제103조의19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별지 제43호의12서식)의 ②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 4. 🚯 외국법인세액란: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별지 제43호의12서식)의 ⑦금액을 적습니다.
- 5.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⑥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란의 금액에 ④ 외국법인세액 조정액을 가산한 후 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 6. ⑧ 연결산출세액란: ⑭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7.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 ⑷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8. ®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 의 ⑤ 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 「지방세법」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⑩ 동업기업 가산세의 금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⑤ 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⑩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⑯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 동업기업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9. 기납부세액계란(⑳・颂): 기납부세액은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10. ②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의 ® 이월과세 합계의 금액과 ⑮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11. ③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 ⑪ 토지등양도소득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12. ③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⑧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2017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⑧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⑩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13. ③ 세율란: 「지방세법」 제103조의31제5항에 따른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 14. ⑱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⑫ 미환류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15. ⑩ 이자상당액란: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⑩ 이자상당액"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 16. 42 경정 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 1) 「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1조제1항 단 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 2) 「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 3) 「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 4)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 5)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
- 17. ④ 분납할 세액란: ⑥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Ⅵ. 재산세 개정내용

지방세법

1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확대(법 §118)

Ⅱ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분할납부 기한	□ 분할납부 기한 연장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개정내용

- 납세자 편익 증진, 다른 자산 과세의 분할납부 기한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 ※ (분납기한) 종부세 6개월 이내,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시 5~10년 이내 등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②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제118조(분할납부)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	
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u>3개월</u>
할 수 있다.	

2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법 §118의2)

Ⅱ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납부유예 요건	□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

□ 개정내용

○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납부유예 신청 대상임을 명확화

□ 적용요령

○ 납부유예 신청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②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치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u>제11</u>	<u>주택</u>
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재	<u>에 대한</u>
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	
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	
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	
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11조의2에	1
따른 1세대 <u>1주택</u> 의 소유자일	<u>1주택(제4조제1항에</u>
것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
	<u>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3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부칙 §2)

Ⅱ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23년까지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 재산세 세율 특례 기간 연장(3년)
○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 '26년까지 세율 특례를 적용토록
소유자에게 '23년까지 세율	3년간 추가 연장
특례 적용	

□ 개정내용

○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간 추가 연장

□ 적용요령

○ '26년까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②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법률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제111조의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2, 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	
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	<u>6</u>
<u>년</u> 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	<u>년</u>
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1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영 §103의2·§118)

Ⅱ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영§103의2)	예외규정 신설
○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 사실상 철거·멸실된	부속토지 :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u>6개월 이내</u>	날부터 <u>6개월 이내</u> - 단, <u>빈집*</u>의 경우 <u>3년 이내</u> * 「소규모주택정비법」및 「농어촌정비법」상 개념
□ 세 부담 상한 특례(영§118)	□ 세 부담 상한 특례 강화, 확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u>「농어촌 정비법」</u> 에 따른 빈집 철거 시
빈집 철거 시 : 전년 주택세액을	: 전년 주택세액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150% 상한율 적용(3년간)	150% 상한율 적용(<u>5년간</u>)
- 단, 주택세액은 매년 30%씩 상승	- 단, 주택세액은 매년 <u>5%씩 상승</u>

□ 개정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특례 강화로 빈집 정비 지원
- ① 세부담 상한 적용 시 철거 직전 주택세액을 전년 토지세액으로 간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주택세액의 한해 증가규모도 기존 30%에서 5%로 인하)
- ② 철거 後 별도합산과세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 철거 시에도 동일한 세액 특례 부여

구분	현 행	개 정
별도합산과세	▶ 주택 철거 시 : 6개월	 ▶ 주택 철거 시 : 종전과 동일 ▶ 빈집* 철거 시 : 3년 * 「소규모주택정비법」및 「농어촌정비법」 상 개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시>
세부담 상한* 전년세액 계산방식 *전년세액×150%	 토지로 과세하되 3년간 철거 직전 주택세액(A)을 전년 토지 세액[*]으로 간주하여 세부담 상한 적용 * 1년차 A, 2년차 A×1.3, 3년차 A×1.3² ▶ 별도합산 6개월 	 토지로 과세하되 5년간 철거 직전 주택세액(A)을 전년 토지 세액*으로 간주하여 세부담 상한 적용 * 1년차 A, 2년차 A×1.05, 3년차 A×1.05² → 5년차 A×1.05⁴ 별도합산 3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시>
	▶ 혜택없음	▶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동일한 혜택 부여

□ 적용요령

○ '24.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
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	는 주택의 범위)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	
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	
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	
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	
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	
터 <u>6개월</u> 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6개월(「빈집 및 소규모주택

개정 전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 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가. ~ 다. (생 략)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

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7	정	후
	1 0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
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빈집이 철거된 경우에는 3년)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1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
세대상 토지가 다음의 구분
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
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개정 전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30/100)ⁿ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개정 후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 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의 경우에는 3년동안, 2)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주택을 건 축 중인 것으로 본다]인 경우 에는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 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 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또는 「빈집 및 소규 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에 따른 정비사업(빈집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의 경 우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30/100)ⁿ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개정 전	개정 후
2. ~ 4. (생 략)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05/100) ⁿ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2. ~ 4. (현행과 같음)

2 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규정 정비 (영 § 111)

Ⅱ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별장 중과세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시행령 상 여전히 별장 규정 존재	□ 별장 관련 규정 정비

□ 개정내용

○ 별장이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23.3.14.)됨에 따라, 시행령 상 별장 관련 표현 정비

□ 적용요령

○ 별장 규정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로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	
거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3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u>법 제</u>	법
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u>따른 별장 또는</u> 고급주택(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	
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1 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정비 (규칙§57)

Ⅱ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별장 중과세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시행규칙상 여전히 별장 규정 존재	□ 별장 관련 규정 정비
TOTAL TELEGRAPHICAL TOTAL TELEGRAPHICAL TELEGRAPHICA TELEGRAPHICAL TELEGRAPHICA TELEG	

□ 개정내용

○ 별장이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23.3.14.)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 별장 관련 표현 정비

□ 적용요령

○ 별장 규정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로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제2	토지의 범위)
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	
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토지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3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	
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u>별</u>	고급
<u>장 또는 고급주택</u> , 골프장, 유원	<u> 주택</u>
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	
ス	_

Ⅷ. 자동차세 개정내용

지방세법

1 주행분 자동차세의 소액 징수면제 신설(법 §137)

Ⅱ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소액 징수면제 조항 부존재	□ 소액 징수면제 조항 신설
	○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주행분)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 개정내용

○ 주행분 자동차세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그 자 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 적용요령

○ '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제137조(신고납부 등) ① (생 략)	제137조(신고납부 등) ① (현행과 같
	<u></u> 은)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	2
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면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3	
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	
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	
로 징수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자동차세로 징수</u>
	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
	만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세를 징
	<u>수하지 아니한다.</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지방세법 시행령

연납 납부서 무신고 송달대상 확대(영 §125②)

Ⅱ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연납 납부서 무신고 송달	□ 연납 납부서 송달 대상 확대
○ 前년도 1월 연납신고납부자	○ 前년도 연납신고납부자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고하여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납세	대해 과세관청에서 다음 연도
자 편의를 위해서 1월 연납 신	1월에 연납 납부서를 송달할 수
고납부자에 대해서 다음 연도 신	있도록 개선
고가 없더라도 연납 납부서 송달	
가능	
※ 연납 신고납부 기간 : 1·3·6·9월(4회)	

□ 개정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 서는 그 다음 연도의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도 록 함.

□ 적용요령

○ 2023년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 2024년 1월 연 세액 납부서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개정조문

개 정 안 혅 했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 부) ① (생략) 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 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 출세액 및 납부액을 적어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같은 항 각 호 에 따른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여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8조제3항 제1호에 따라 1월 중에 연세액을 은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 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1월 중 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 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 군수 · 구청장은 납부서를 송달할 다. <u>수 있다.</u>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Ⅷ. 지역자원시설세 개정내용

지방세법

1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월 인상 (법 §146②3)

Ⅱ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 발전량 kWh당 0.3원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발전량 kWh당 0.6원

□ 개정내용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 kWh당 0.3원에서 **0.6원** 으로 **인상**('21년 「지방세법」 개정사항)

□ 적용요령

- '24.1.1. 이후 발전분부터 인상된 세율 적용
 - ※ 통상 '24년 1월에 신고 납부하는 '23년 12월 발전분에 대해 인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개정 전	개정 후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략)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 과 같음)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 Wh)당 <u>0.3</u> 원	3 <u>0.6</u> 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법 §143)

Ⅱ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u>재산세 납세의무자</u>

□ 개정내용

-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준용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일치함을 명확히 함
 - (개정 전)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개정 후)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적용요령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	제143조(납세의무자)
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	3
의무자: <u>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u>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u>유자</u>	재산세 납세의무자

IX. 지방교육세 개정내용

지방세법

지방교육세 조문 정비 (법 §152)

Ⅱ 개정개요

1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교육세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조문 ○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를	□ 지방교육세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조문 정비 ○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 징수· 납입 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	함께 부과·징수· 납입
* 지방세법 제60조제7항에서 세관장은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여야 함	→ 세관장이 부과·징수한 지방 교육세를 '납입'하는 절차 명시

개정내용

○ 세관장이 담배소비세와 함께 부과·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납입' 하는 문구 명시

< 지방교육세 조문 정비배경

- 외국 입국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담배소비세를 세관장에게 직접 신고 납부 토록 지방세법을 개정('15.12.)하였으나, 담배소비세 등을 대리 징수하여 보관할 국고 계정이 없어 현재까지 세관장이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기재부는 「국고금관리법」의 '국고금 정의' 및 '국가가 징수한 지방세의 납입규정'을 보완하여 세관장의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징수 및 납입 근거 마련 中
- ※ (현행) 지방소비세 → (개선)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 → 국고금 관련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지방세법 상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징수· 납입하는 경우 함께 징수·납입하는 지방교육세에 대한 조문 정비 필요

現 국고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現 지방세법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 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152(신고 및 납부과 부과·징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적용요령

○ 시행일 이후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②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	
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거나 <u>제60조제6항</u> 에 따라	<u>제60조제6항 및 제7항</u> -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u>부과·징</u>	<u>부과·징수</u>
<u>수하는</u>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	<u>· 납입하는</u>
육세를 함께 <u>부과·징수한다.</u>	<u>부과・징수・납입한다</u> .
③ ~ ⑤ < 신 설 >	③ ~ ⑤ (생 략)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	⑥
<u>과·징수</u>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과·징수·납입</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교육세 조문 정비 (법 §152·§153)

Ⅱ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 신 설 >	□ 지방교육세의 특별징수의무자 부과·징수 규정 신설
	 ○ 담배소비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제조자·수입판매 업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설정하여 부과액 전액을 대신 부과·징수한 후 사후 정산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액의 43.99%)에 대한 특별징수권한도함께 마련

□ 개정내용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시 해당 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설정하여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함

□ 적용요령

○ 시행일 이후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n - 1	33=
개정 전	개정 후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②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	
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	
징수하거나 <u>제60조제6항</u> 에 따라	<u>제60조제6항 및 제7항</u> -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u>부과·징</u>	<u>부과·징수</u>
<u>수하는</u>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	<u>· 납입하는</u>
육세를 함께 <u>부과·징수한다.</u>	<u>부과·징수·납입한다</u> .
<u><신 설></u>	③ 제62조의2에 따른 특별징수의
	무자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
	<u>께 부과·징수·납입한다.</u>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부
	과·징수·납입에 대하여 불복하
	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⑤ 지방교육세의 특별징수, 납입
	및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하여는 제6
	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	②
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	
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	
액으로 하여 <u>보통징수</u> 의 방법으로	<u>보통징수(제152</u> 조제 <u>3항에</u>
징수한다.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
	宁)